

모처럼 가족 만남 기쁨에도...코로나 옮길까 마음 졸여

조마조마했던 광주·전남 설 풍경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어느때보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설을 보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만나지 못했던 고향 집을 방문하면서도 코로나 확산세를 우려, 사적 모임 가능인원(6명)을 고려해 방문 일정을 짜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집에만 머무르는 '집콕'을 하면서 간만에 찾아온 손주들로 인한 증간소음 갈등에 맘 졸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자고 일어나면 100명씩 늘어나=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날 27일 422명을 시작으로 28일(28일)→477명(29일)→482명(30일)→500명(31일)→618명(1일) 등으로 급증했다.

전남지역 확진자도 293명(30일)→411명(31일)→464명(1일) 등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막상 설에 가족들과 만나기로 결정해놓고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동수(64·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부모님 집을 가기 전 일가족이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서 "고향집에 가서도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주혁신도시에 사는 김모(44)씨는 "전날 가서 음식을 만들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설에는 당일 날 분가와 처가를 둘러 인사하고 왔다"면서 "산소도 따로 가고 연휴 내내 집에서 머물렀다"고 했다.

이모(여·46)씨는 "5남매 중 막내인 우리 가족이 홀로 있는 시어머니와 설날 아침을 맞았고 나머지 세 자식들이 시간을 정해서 각자 순서대로 방문했다"고 했다.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와 5개 구청 선별진료소도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와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설 당일인 지난 1일에서만 광주지역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1만 2486건(PCR 7268건·자가

사적 모임 인원 맞추기 등 조심

자녀들 순서 정해 고향집 방문

외출 대신 '집콕'에 증간소음 걱정

주택가 일대 명절 쓰레기 산더미

연휴 마지막날 선별진료소 장사진

검사 5217건)의 검사량을 기록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날인 2일 정오께 광주시청 임시 선별진료소와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섰다.

◇모처럼 손주 왔는데, 증간소음 싸울까 조마조마=올 설 연휴는 대다수 시민들이 코로나19 탓에 외출은 삼가고 '집콕'하면서 증간 소음을 호소하는 지역민들도 많았다.

광주지역민들이 소통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설 연휴 기간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증간 소음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한 카페 회원은 "꼭대기 층이라 증간 소음은 없었는데, 아랫집인지 옆집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들지 못했던 쿵쿵쿵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린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회원은 "손주가 놀러와서 밤 12시까지 뛰어나더니 이젠 어른 차례인가 보다"고 하소연을 했다. 아랫층 주민들만 불편한 건 아니다. 나주 남평에 사는 김모(74)씨는 "명절 날 오전에 모처럼 온 손주들이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나 잠 못 자겠다고 전화를 했다"면서 "민감한 줄 알겠지만 노인네들만 사는 집에 하루 잠깐 온 손주들 소음도 이해하지 못하면 차라리 단독 주택을 사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좋아하는 등 도심스러운 연휴를 보낸 탓에 112신고 접수도 감소한 것으로



다시 일상으로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일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동안 112신고는 하루 평균 1089건 접수돼 지난해 1254건보다 13.2% (165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45건 발생, 교통사고 사상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도 112신고 접수가 지난해 1550건에서 올해 1356건으로 12.5% 감소했다. 교통사고도 62건에서 53건으로 14.5% 줄었다.

집안에서 조용한 명절을 보낸 시민들이 많은 탓

에 광주지역 주택가 일대는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로 가득했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명절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배달 음식 용기부터 음식물 쓰레기까지, 플라스틱 마대자루는 오늘날 벌써 두번째 갈아 끼웠다"고 말했다.

서구의 경우 명절 당일부터 이틀 간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면서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주택가도 쓰레기로 가득찬 종량제봉투가 전봇대 아래 수북했다.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이날 하루종일 수거장에

널부러진 쓰레기를 정리하느라 바빴다. 단독주택도 비슷해 서구지역 한 가정집 대문 앞에는 100L 종량제봉투가 4개나 세워져 있었다.

집 주인 B씨는 "아들 부부가 왔다 갔는데, 지난 명절에 못 만나기도 했고 외식도 할 수 없고 이것저것 집에서 장만을 많이 했다"며 "쓰레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쓰레기수거를 안하는 날이다 보니 집 앞에 세워졌다. 다른 집에서도 평소보다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클럽 붕괴' 1심 선고 2년 넘게 걸렸다

불법 증축·안전불감 드러나 업주 등 운영자들 징역 선고

2명의 사망자를 비롯,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사고난 지 2년이 넘었고 재판에 넘겨진 뒤로도 2년이 훨씬 지나서야 1심 판결이 선고된데 따른 '지연 판결',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눈길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34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클럽 업주 A(55)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클럽 사업자 등록된 B

(여·42)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클럽을 공동 운영한 C(47), D(4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에는 이들의 불법 증축 과정, 허술한 안전 의식 등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9월 설계도도 없이 임의로 증축공사를 시행했고 증축한 곳에 손잡들이 자유롭게 올라가 출·수출 수 있는 데도 버틸 수 있는지 기본적인 건축구조기준조차 고려하지 않거나 하면, 용접도 전문 기술자가 아닌 운영자가 의뢰해 대충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을 운영한 3년 여 동안 종업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은 전혀 없었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증축에 따른 안전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로 드러났었다. 관련 조례상 출입가능인원(349명)을 넘긴 393명을 출입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건축물을 증축하는가 하면, 증축 과정에서 하중 등을 고려해 시공하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해 지난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38분께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범행은 고의가 아닌 과실범으로, A씨 등이 모두 반성하고 사망자 유족들을 포함해 국내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초로 클럽을 개업, 증축해 운영하다 지난 2016년 A씨 등에게 넘긴 E(47), F(54)씨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최초 증축 공사 이후 4년이 지나 사고가 났고 중간에 A씨 등의 2차 증축 공사가 이뤄진 점 등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800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서적 학대' 사회복지법인 손배 책임 인정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법원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보호시설 관리자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4-1부는 A씨가 광주 모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6살이던 지난 2016년 1월, 거주하고 있던 복지법인 원장 B(여·58)씨 등의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밟는가 하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 받고 시설 내 방을 돌면서 반성문을 읽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당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C복지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

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사용자인 복지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 행위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C법인은 여성 보호 대상자들을 보호·양육하는 시설의 운영법인이므로, 해당 시설 원장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전까지 해당 시설 관계자의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로서 해당 시설 관계자의 사무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은 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